


 축산
법령

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7.1][법률 제16115호, 2018.12.31, 일부개정]

○ 개정이유

이하 동문

○ 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

2019년 3월 14일

국무총리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
문재인 (인)

이낙연

김부겸

◎ 대통령령 제29622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호 중 “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”를 “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13조, 제37조제4항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법 제3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32조제1항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.

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기준·규격 및 표시·광고 등”을 “기준·규격, 기능성 및 안전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「식품위생법」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축산물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식품등”으로 한다.

